

문서번호	BSKS-1-1-08
제정일자	2012.02.01.
최종개정일자	2022.12.20.
페이지 수	1/10

0010 00 01 -3 =3	0010 00 15 -1 -1	00100001 -11-1	00100001 -11-1
2012.02.01.제정	2013.09.17.개정	2016.03.01.개정	2016.09.01.개정
2016.09.01.개정	2018.02.28.개정	2019.02.14.개정	2019.07.16.개정
2020.03.03.개정	2020.04.21.개정	2020.06.19.개정	2020.07.03.개정
2020.09.25.개정	2021.02.24.개정	2022.04.15.개정	2022.12.20.개정
			소관부서 : 교무처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부산경상대학교 학칙 제35조(수업)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강의시간 및 편성) 강의시간은 50분(야간 개설 강좌 45분)을 원칙으로 하며, 교과목별 강의 시간 편성은 주중(월~금)에 균형 있게 배정한다. 단, 필요에 따라 사전에 총장의 승인을 받아 토, 일요일에도 편성할 수 있다. 토, 일요일 수업의 강의시작 시간은 학과(계열)(이하 "학과"라 한다.)의 사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으며, 강의시간은 야간개설 강좌와 동일하게 할 수 있다.

- **제3조(수업 편성 및 교원의 주당 수업일수)** ① 각 학과의 수업은 주 5일간 편성하여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 - ② 전임교원의 수업은 주 4일 이상 편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, 보직교수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로 한다.

제4조(교양과목의 수업시간 지정) <개정 2016.03.01.,삭제 2019.07.16.>

- **제5조(분반 및 폐강기준)** ① 분반은 학과(전공) 및 교과목의 특성을 고려하여 분반기준에 의 거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한다.
 - ② 과목당 수강인원이 45명을 초과하는 경우는 분반을 원칙으로 한다. 단, 외국어교과목과 실습 교과목은 35명을 초과할 경우 총장의 허가를 받아 분반할 수 있다.<개정 2013.09. 17.>
 -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목은 폐강기준에 부합하여 폐강한다. <개정 2016.03.01., 2019.02.14., 2020.03.03., 2021.02.24.>
 - 1. <삭제>
 - 2. <삭제>
 - 3. 수강신청 인원이 10명 미만인 경우 폐강 <신설 2019.02.14.>, <개정 2021.02.24.>
 - ④ 강좌의 수강인원이 분반 기준에 미달할 경우 합반할 수 있다.
 - ⑤ 제3항의 폐강기준에도 불구하고, 학기제 현장실습, 폐과·폐전공, 국가사업(과정평가형 교육·훈련과정, 일학습병행제 등) 등으로 인해 수강인원이 미달할 경우, 교육과정심의위 원회의 의결로 일부 개설을 허가할 수 있다. <개정 2019.02.14., 2021.02.24.>



문서번호	BSKS-1-1-08
제정일자	2012.02.01.
최종개정일자	2022.12.20.
페이지 수	2/10

- 제6조(미개설과목 공고) 각 학과는 매 학기 해당학과 교육과정에 의한 교과목을 모두 개설하여 한다. 다만, 그 중 특별한 사유 발생으로 개설하지 못할 교과목이 있는 경우에는 학과장이 그 사유를 기재하여 교무처장에게 교과목 미개설 신청을 하여야 하며, 교무처장은 이를 총장의 결재를 받아 공고하여야 한다.<개정 2020.09.25.>
- **제7조(학년력)** 교무처장은 다음 학년도의 수업계획을 학년력으로 작성하고, 시행 학년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총장의 승인을 받아 발표하여야 한다. <개정 2020.09.25.>.
- 제8조(강의시간표 작성 및 공고) ① 각 학과장은 교과과정표에 배정된 강의 시간수에 따라 강의시간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. 단, 외국인회화 과목은 총장의 허가를 득하여 시간을 늘려서 운영할 수 있다.
 - ② 교무처장은 매학기 수강신청 5일전까지 강의시간표를 확정하고 이를 대학 홈페이지의 학사종합서비스에 공고하여야 한다.<개정 2020.09.25.>.
- 제9조(수강) 저학년은 고학년 교과목을 원칙적으로 수강할 수 없다.
- 제10조(강의계획서 작성) ① 교과목의 담당교수는 강의계획서를 수강신청 1주일 전까지 각 전산시스템에 담당교수가 직접 작성하여 탑재한다. <개정 2020.06.19.>
 - ② <삭제>
- **제11조(수업관련 서류 제출시기 및 방법)** 수업관련 서류는 다음과 같이 제출해야 한다. <개 정 2022.12.20.>
 - 1. 교육과정 개발보고서 및 교육과정표는 매년 매년 12월말까지<개정 2019.07.16., 2020.06.19., 2020.09.25>
 - 2. 시간배정표, 과목별 담당교수, 시간표는 매학기 시작 1개월 전까지<개정 2019.07.16., 2020.06.19.>
 - 3. 강의계획서(학사종합서비스에 등재)는 수강신청 1주일 전까지
- **제12조(준수사항)** ① 시험문제는 각 분반별 난이도를 고려하여 상이하게 별도로 출제하여야한 다. <개정 2020.06.19.>
 - ② 성적분포비율은 분반별 과목 담당교수가 동일할 경우 과목별 전체 수강인원을 기준으로 적용하고, 과목별 담당교수가 상이할 경우 분반별 수강인원을 기준으로 적용한다. <개정 2020.06.19.>
 - ③ 삭제 <2016.03.01.>
- 제13조(휴강 및 보강) ①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휴강 또는 결강을 하였을 경우 담당교수는 휴·결강 및 보강 일정과 사유를 전산시스템에 입력 한 후 '휴·결강 및 보강 계획서'[별지 제1호 서식] 와 근거서류(공문 등)를 교무처로 사전에 제출하여야 하고, 휴·결강 및 보



문서번호	BSKS-1-1-08
제정일자	2012.02.01.
최종개정일자	2022.12.20.
페이지 수	3/10

강계획서에 따라 보강을 실시하여야 한다. <개정 2020.06.19., 2020.09.25>

- ② 사전 휴 · 결강 및 보강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출장을 허가 할 수 없다.
- ③ 휴·결강 및 보강계획서 제출여부는 다음과 같다. <표 개정 2020.06.19.,.2020.09.25>

구분	수업인정 여부	보강실시 여부	휴·결강 및 보강계획서	비고
MT, 졸업여행, 체육대회, 축제	불인정	보강실시	제출	
출장, 개인경조사 등의 휴강	불인정	보강실시	제출	
전공 관련 산업체 견학, 세미나 및 특강, 취업캠프, 인성캠프, 공동체 체험학습, 현장실습	인정	보강미실시	미제술	학과(계열)장은 사전에 학생산 학취업처장을 경유하여 내부 결재 득한 후 사본을 교무처 에 제출요함
중간, 기말고사	인정	보강미실시	미제출	

- ④ 휴·결강 및 보강계획서에 따라 보강을 실시한 후 보강일을 기준으로 7일 이내에 [별지 제3호 서식]의 보강 결과보고서를 교무처로 제출하여야 한다. <신설 2020.06.19.><개정 2020.09.25.>
- ⑤ 사전에 '휴·결강 및 보강계획서'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휴·결강한 경우와 '휴·결강 및 보강계획서'에 따른 일정에 보강을 진행하지 않은 경우 1회 적발 시 교무처장의 구두경고, 2회 이상 적발 시 총장 명의 '주의' 조치한다. '주의' 조치 내역은 교수업적평가의 정성평가에 반영한다. <신설 2020.06.19.><개정 2020.09.25.>

제14조(수업인정) 삭제 <2016.03.01.>

제15조(교원의 책임시수) ① 학생지도 및 수업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대학이 정하는 교원의 책임시수 (삭제)는 다음과 같다.<개정 2013.09.17., 2016.03.01. 2016.09.01.><표 개정 2016.09.01., 2021.02.24.>

직 위	책임시수
부총장	3
처장	6
부처장(학부장)	9
부(직)속기관장	10
학과(계열)장	10
삭제<2016.3.1>	삭제
삭제<2016.3.1>	삭제
삭제<2016.3.1>	삭제
일반교원	12
산학협력중점교원	8

- ② 산학협력중점교원은 책임시수를 초과할 수 없다.(단, 실습과목은 예외로 한다.)<개정 2013.09.17.>
- ③ 전임교원이 학기당 책임시수를 초과할 경우 초과 강의료를 지급한다. 단, 책임시수의



문서번호	BSKS-1-1-08
제정일자	2012.02.01.
최종개정일자	2022.12.20.
페이지 수	4/10

50%를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으며 부득이하게 초과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총장의 승인을 얻어 지급할 수 있다.<개정 2020.07.03.>

- ④ 학기당 책임시수를 충족하지 못한 교원은 해당학기 종료 후 2개 근무 학기 이내에 부족한 책임시수를 보완하여야 한다.<개정 2020.07.03.>
 - 1. 부족한 책임시수 보완에 따른 초과시수에 대해서는 초과강사료를 지급하지 않는다.
 - 2. 시간표 확정 이후 보직변경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책임시수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총장의 허가를 얻어 책임시수를 조정할 수 있다.
 - 3. 2개 근무 학기 이내에 부족한 책임시수를 보완하지 못하는 경우 또는 2개 근무 학기 연속으로 책임시수를 충족하지 못한 교원은 기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책임시수 이행 비율에 따라 그 다음 학기(6개월)의 본봉을 조정한다. 미충족 사항은 교수업적평가 정성평가에 반영한다. <신설 2021.02.24.>

제15조의1(책임시수 미충족 시 본봉조정기준) 2개 근무 학기 이내에 부족한 책임시수를 보완하지 못하는 경우 또는 2개 근무 학기 연속으로 책임시수를 충족하지 못한 교원은 기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다음 학기(6개월) 본봉을 조정할 수 있으며,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.

부족시수	조정비율
1 ~ 3 시수	10% 감봉
4~6 시수	20% 감봉
7시수 이상	30% 감봉

- 제16조(책임시수의 일부 면제 및 상한·하한시수) ① 총장은 전임 보직교원과 정년퇴임하는 교원의 마지막 1년에 대하여는 기본시간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.
 - ② 온라인 강의 시수는 책임시수에 포함한다. <개정 2021.02.24.>
 - ③ <삭 제> <2021.02.24.>
- 제17조(외부수업) 학과별 개설된 교과목 중에서 외부에서 수업(실습, 이론)을 하고자 할 때는 다음의 각호와 같이 하여야 한다.
 - 1. 학과별 교과목 중에서 외부수업을 하고자 할 때는 교무처장을 경유하여 총장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.<개정 2020.09.25.>
 - 2. 외부수업의 기안문에는 일자, 장소, 인원, 명단 등이 명시되어 있어야 하고 기안문은 반드시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20.09.25.>
- 제18조(전임교원 외부출장) 우리 대학의 전임교원이 타 대학 및 기관에 일정 기간 출강하고 자 할 때는 사전에 [별지 제2호 서식]의 타 대학(기관) 출강원을 제출하여 총장의 출강 승인을 받아야 한다.
- 제19조(원격수업 콘텐츠 관리) ① 원격수업 콘텐츠의 질 관리와 원격수업의 원활한 운영과 관리를 위해 원격수업 관리 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해야 한다.
 - ② 원격수업의 콘텐츠는 외부 협력기관이 제작, 보유 중인 콘텐츠 등 다양하게 활용할 수



문서번호	BSKS-1-1-08
제정일자	2012.02.01.
최종개정일자	2022.12.20.
페이지 수	5/10

있다.

③ 일정기간이 경과된 콘텐츠는 위원회에서 콘텐츠 유지 또는 수정 여부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.

<조 신설 2020.03.03.>

제20조(규정의 미준수) 사전에 '휴·결강 및 보강계획서'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휴·결강한 경우나 책임시수를 지키지 않는 등 수업운영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규정 미이행 2회시 '주의' 조치, 3회 시 '경고' 조치, 4회 시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원징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. 징계에 관한 세부사항은 교원징계위원회규정과 사립학교법을 준용한다. 단, 미이행 누적기간은 교원의 임용기간으로 한다.<신설 2022.12.20.>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2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본교 행정조직 개편(2014.02.01.)에 의하여 『교무처』를 『교학처』 로 『산학처』를 『산학·취업처』로 명칭 변경하고 2014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본교 행정조직 개편(2015.12.24)에 의하여 『산학·취업처』를 『산학 처』로 명칭 변경하고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

문서번호	BSKS-1-1-08
제정일자	2012.02.01.
최종개정일자	2022.12.20.
페이지 수	6/10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8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9년 2월 14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본교 행정조직 개편(2020.04.21.)에 의하여 『산학처』를 『산학취업 처』로 명칭 변경하고 2020년 4월 2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20년 6월 19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20년 7월 3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본교 행정조직 개편(2020.09.25.)에 의하여『교학처』를『교무처』로 ,『산학취업처』를『학생산학취업처』로 명칭 변경하고 2020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21년 2월 24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

문서번호	BSKS-1-1-08
제정일자	2012.02.01.
최종개정일자	2022.12.20.
페이지 수	7/10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본교 행정조직 개편(2022.04.15.)에 의하여 『학생산학취업처』를 『산학처』로 ,『기획처』를 『기획실』로,『입학홍보처』를 『입시홍보실』 명칭 변경하고 202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.



문서번호	BSKS-1-1-08
제정일자	2012.02.01.
최종개정일자	2022.12.20.
페이지 수	8/10

[별지 제1호 서식] <개정 2016.03.01., 2020.09.25>

휴 · 결 강 및 보 강 계

1. 학과/계열 :

2. 사 유 :

3. 기 간 : 20 년 월 일 ~ 월 일()일간

	계	팀 장	처 장
결			
재			
"			

4. 휴・결강 및 보강 내용

청L 코 / 게 63	학년	нl.	교과	목명	담당교수		시수	휴 •	휴·결강 일정		보강/대체		일정
학과/계열		반	휴강과목	대체과목	휴강교수	대체교수	717	월/일	요일	교시	월/일	요일	교시

20 년 월 일

신 청 인: 📵

학과/계열장:

부산경상대학교 교무처장 귀하



문서번호	BSKS-1-1-08
제정일자	2012.02.01.
최종개정일자	2022.12.20.
페이지 수	9/10

[별지 제2호 서식]

타 대학(기관) 출 강 원

결재일	계	팀장	처장		

소속학과(계열)	학과(계열)
직 급	
성 명	

아래와 같이 학년도 제 학기 중 타 대학 출강을 하고자 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아 래 -

- ·출 강 기 간 :
- ·출 강 시 간 :
- ·출강대학(기관):
- · 담당 교과목 :

년 월 일

출 강 인: (인)

학과(계열)장: (인)

부산경상대학교총장 귀하



문서번호	BSKS-1-1-08
제정일자	2012.02.01.
최종개정일자	2022.12.20.
페이지 수	10/10

[별지 제3호 서식] <신설 2020.06.19.>

휴·결강에 따른 보강 결과보고

						결	담	당	투	부 장		Ā	허 장
1. 학과/계열 :													
2. 교과목 기본정보													
학과/계열 학년 반			교과목명			담당교수			시	수	수강 인원		
										1			
3. 보강내용													
	보강.	계획						보강길	결과				
월/일	요'	일	교人	교시 월/일		5	2일	교시		출석 인원			출석률
4. 수업내용		L											

2000년 00월 00 일

신	청	인	:		(인)
---	---	---	---	--	-----

학과/계열장 : (인)

부산경상대학교 총장 귀하